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0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양부남 · 안도걸 · 민병덕
김문수 · 조계원 · 최혁진
박정현 · 박수현 · 이강일
정준호 · 정진욱 · 강준현
이광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아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를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3호의”를 “제3호의2의”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2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을 “사법경찰관리,”로, “교정직공무원으로”를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른다.

제55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 ⑦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피해자보호명령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른다.

제55조의3제1항 단서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29조제13항 또는 제5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u>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u>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 ----- ----- ----- -----제 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u>제3호의2의</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
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
레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
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
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
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⑩ ~ ⑫ (생략)

<신설>

⑤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3개월-----

-----.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사법경찰관리,-----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
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
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2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른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4.·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4.·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
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피해자
보호명령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거
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
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
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
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
게 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제55조의2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른다.

